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2.8.29.(월)까지 우리 처(식품표시광고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명	대표발의자 (의안번호)	주요내용	발의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백종헌의원 (2116886)	○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부당한 표시·광고에 따른 과징금을 해당 식품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	'22.8.17.

2. 아울러, 해당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 검토의견서.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관계부처, 지자체, 관련 협회, 본부(55개 전부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43개 전부서), 6개 지방청장(54개 전부서)

주무관 **조효정** 사무관 **이지영** 식품표시광고정책 전결 2022.8.19. **오재준**
책과장

협조자

시행 식품표시광고정책과- (2022. 8. 19.) 접수
12227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 www.mfds.go.kr

전화번호 043-719-2183 팩스번호 043-719-2180 / chipchipstar00@korea.kr / 대국민 공개